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 선고 2004누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2001. 6. 22. 어업인지원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어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경쟁력 없는 어선이 우선 감축되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일반적으로 어업경영에 있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는데, 3년분의 평년수익액이 대형트롤러선의 경우 7억 원,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경우 5억 원, 기타 어선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영업이익이 모두 매출액 대비 15% 이상이어서 어업경쟁력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업지원금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어업자 등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 등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중앙위원회에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앙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원대상 어업자 수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 모두를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일부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 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폐업지원금은 과거 3년간의 어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금액으로서 개별 어선의 어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점,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